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4-6호

「강릉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강릉시의회의장

강릉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기본계획 수립·추진 및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 교육 및 홍보, 전문가 등 자문 사항(안 제6조~제7조)
-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rhdchfhd@korea.kr
- 팩 스: 033-640-4070

- 붙임 1. 강릉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알코올, 마약류,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추진) 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시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